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

[1]. 제1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2.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제3조 및 제3조의 2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한다.”

[2]. 제4조제1항의 두문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양 당사국은 제7-다장(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근거하여 행해진 약속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국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제5조제4항의 각주 2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국은 유럽 평의회의 「국경을 초월하는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협약」의 당사국 지위로부터 파생된 자국의 유럽 작품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영국의 국내법에서 효력이 부여된 지침 2010/13/EU상 유럽 작품 정의에 구현된 비차별적 대우를 이행할 것이다. 이 각주의 목적상, 이 협정의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5조제5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제40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제71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호, 2024. 7. 3.)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한국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 언급된 한국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³⁾”

[5]. 제7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2. 양 당사국은 문화 전문가 및 실연자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장비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제2. 8조(상품의 일시 반입) 및 각국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허용한다.”